

## 약관공시사항

### □ 기본사항

개정일	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17-12-20	2018-01-04	판매중	적용

### □ 신구조문대비표

구분	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	변경전 <sup>주)</sup>	변경후 <sup>주)</sup>
외환	외국환거래약정서	<p>제5조 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</p> <p>1. 3. (생략)</p> <p>2. 은행은 제1항의 이자, 할인료,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.</p> <p>제10조 매입대금상환</p> <p>1.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환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</p> <p>①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(당연 기한 전 채무 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환환어음</p> <p>② 환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(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환환어음</p> <p>③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환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환환어음</p>	<p>제5조 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</p> <p>1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은행은 제1항의 이자, 할인료,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(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,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,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)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.</p> <p>제10조 매입대금상환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①~②,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삭제)</p>

		<p>④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</p> <p>⑤ 본인이 화환어음 만기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</p> <p>⑥ 제3호 및 제4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</p> <p>(신설)</p> <p>2 ~ 4 (생략)</p>	<p>2.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, 전자우편,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,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①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</p> <p>②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</p> <p>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며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</p> <p>3 ~ 5 (현행 2 ~ 4와 같음)</p>
--	--	---	--

주) 약관 조항(해당 조항 제목 및 조항 내용을 기술할 것)